

				_	
27	IO₽∕		7	-	관리
	I <del>-</del> FOT	<b>一一</b> ノ	/	오	꾸다

관리번호	W-12.1(6)	제정일	2013년 02월 15일
승인책임자	병원장	최근개정일	2016년 10월 31일
검토책임자	규정관리위원장	시행일	2016년 12월 01일
주무부서	심사과, 원무과	검토주기	3년
관련근거	의료기관인증기준12.1	검토예정일	2019년 10월 30일

### |. 목적

의무기록 작성 시 사용할 수 있는 약어와 기호를 표준화하고 금기약어 및 금기기호에 대해 명확히 함으로써 환자 안전을 도모하고 진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이다.

### Ⅱ. 정책

- 1. 병원은 승인된 약어 및 기호 목록으로 '대한의무기록협회 의학약어'를 인정한다.
- 2. 금기약어, 금기기호 목록에 있는 약어는 의무기록 작성에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.
- 3. 의무기록 작성 시 기호 및 약어의 사용은 권장되지 않는다.
- 4. 금기약어, 금기기호 목록은 처방화면 약어조회에서 확인한다.

# Ⅲ. 절차

- 1. 의무기록에 사용되는 약어(기호포함)는 병원 표준약어(기호포함) 목록을 기준으로 한다.
- 2. 환자 치료에 치명적인 오류를 발생시킬 수 있어 의무기록에 사용되지 말아야 할 약어(기호포함) 는 병원 금기약어(기호포함)[별첨 1]목록을 기준으로 한다.
- 3. 등록되지 않은 약어(기호포함)를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는 통용되고 있는 약어사전 또는 의학사전 에 있는 보편적인 약어와 기호를 선택한 후 의무기록위원회에 약어추가를 의뢰한다.
- 4. 의무기록 위원회는 약어 사용 진료과(또는 부서)의 약어 등록 요청사항을 검토 한 후 병원 표준 약어(기호포함)로 승인한다.
- 5. 승인된 병원 표준약어 및 금기약어(기호포함)는 각 진료부서, 병동에 배치하고 게시판에 게시하여 의료진간 부서간 업무에 활용하도록 공유한다.
- 6. 표준약어(기호포함) 및 금기약어(기호포함) 추가와 삭제는 다음의 절차에 따른다.
  - 1) 의무기록에 사용되는 약어를 추가 또는 삭제하고자 할 경우에는 '약어 및 기호 추가 및 삭제 신청서'[별첨 2]를 작성하여 의무기록담당자에 의뢰한다.
  - 2) 의무기록담당자는 진료과(또는 부서)에서 의뢰한 약어를 취합하여 의무기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 또는 삭제한다.
  - 3) 추가 및 삭제가 확정된 약어 및 기호는 즉시 각 진료부서에 배포, 공지하여 알린다.

### Ⅳ. 참고

- 1. 의학약어해설(대한의무기록협회)
- 2. KMLE(Korea medical library engine) 의학검색엔진



# [별첨]

별첨 1. 금기약어 및 금기기호

별첨 2. 금기약어 및 금기기호 조회 프로그램

별첨 3. 약어 및 기호 추가 및 삭제 신청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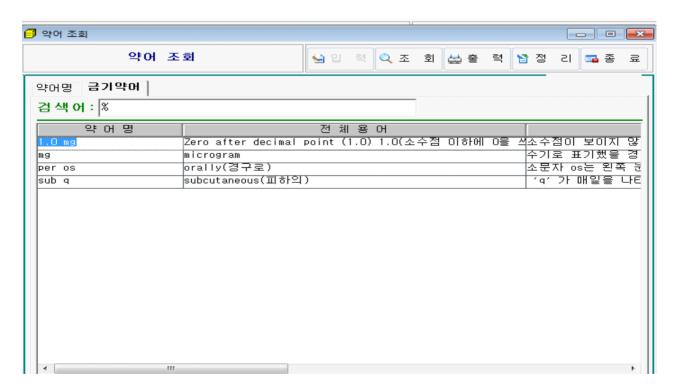
입안자	규정관리위원장	
승인책임자	병원장	
서명일		



### [별첨 1] 금기약어 및 금기기호

금기약어	금기사유	올바른 사용방법				
소수 이하의 0 소수 앞자리의 0	단위 불명확	▶ 0은 반드시 소수점 앞에 쓰고(0.5mg) ▶ 소수점 뒤에는 사용 안함(5mg)				
μg(microgram)	MG로 오인, 용량오류	▶ mcg로 사용				
sub q	"q" 가 매일을 나타내는 q로 오인	▶ subcut or subcutaneous로 사용				
U(Unit)	0, four, cc로 오인	▶ unit로 사용				

## [별첨 2] 약어조회 프로그램





[별첨 3] 약어 및 기호 추가 및 삭제 신청서

# 약어 및 기호 추가 및 삭제 신청서

결	신청	의무기 위원경		신청자	신청자 소속 : 성명 : (서명		)	의 무	담당	행정 부원장	병원장	
재				연 신 청	락	처	:		기 록 팀			
제	목		] 상용 약아 ] 상용 약아 ] 금기 약아 ] 금기 약아	삭제   등록								
신경	청내용											
상/	베내용											